



# 보 험 료



## 1 65세 이상인 분(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 【보험료의 액수】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3년마다 각 구시정촌이 정하는 기본액에 소득단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그 금액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개호보험료의 표준적인 단계설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만, 도쿄 도내에서는 많은 시구정촌이 표준적인 설정과는 다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주지 구시정촌의 개호보험담당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소득단계	대 상 자	보 험 료 액
제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생활보호수급자 또는 노령복지연금수급자</li> <li>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도에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li> </ul>	기준액×0.5 (2015, 2016년도 0.45) (2017년도 0.3)
제2단계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도에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만엔 초과·120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75 (2017년도 0.5)
제3단계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제1단계와 제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0.75 (2017년도 0.7)
제4단계	본인은 구시정촌민세가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전년도에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9
제5단계	본인은 구시정촌민세가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제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
제6단계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합계 소득금액이 120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2
제7단계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합계 소득금액이 120만엔 이상·190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3
제8단계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합계 소득금액이 190만엔 이상·290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5
제9단계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합계 소득 금액이 290만엔 이상인 분	기준액×1.7

※제1단계부터 제3단계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개호보험법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됩니다(제1단계에 해당하는 분은 2015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제2단계, 제3단계에 해당하는 분은 2017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표 가운데 ( )내의 부담 비율은 최대한 경감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보험료의 납부방법】

개호보험료의 납입방법에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특별징수」와 금융기관 등에 납입하는 「보통징수」가 있습니다. 특별징수는 노령퇴직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연액 18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는 분이 그 대상이 되며, 연금의 정기지불(연 6회) 시에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보통징수의 지불 시기와 횟수는 구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 2 40~64세인 분(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40~64세인 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의 일부로서 징수됩니다. 보험료의 금액 등은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부과됩니다.

개호보험은 개호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을 상호부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반드시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분에게는 서비스 이용 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① 1년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 → **지불방법의 변경**  
자기부담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전액을 이용자가 일단 부담하게 됩니다. 후일, 신청에 의해 보험급부 분이 환급됩니다.
- ② 1년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 → **보험급부의 일시정지**  
보험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부비를 체납보험료로 총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③ 2년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 → **급부액의 감액**  
보험료는 2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시효가 됩니다만, 서비스 이용 시에 시효가 된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본래 10%(또는 20%)인 이용자 부담이 30%가 되며, 고액개호서비스비 및 입소자개호서비스비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